제79기 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서

당사 정관 제19조에 의거하여 제79기 임시주주총회를 다음과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일시 : 2026년 9월 22일(화) 오전 09시 00분

2. 장소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천호대로14길 18(용두동) 동아에스티(주) N동 7층 강당

3. 회의목적사항
   가) 보고사항 : 감사보고
   나) 결의사항
      ※ 안건 참고자료 참조

4.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 권유에 관한 사항
   우리회사는「상법」제368조의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0조 제5호에 따른 전자위임장권유제도를 활용하고 있으며, 이 두 제도의 관리업무를 삼성증권에 위탁하였습니다.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시거나, 전자위임장을 수여하실 수 있습니다.
   가) 전자투표·전자위임장권유 관리시스템 인터넷 및 모바일 주소 : https://vote.samsungpop.com
   나) 전자투표 행사·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2026년 9월 12일 오전 9시 ~ 2026년 9월 21일 오후 5시
      - 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 (단, 시작일은 09시부터, 마감일은 17시까지 가능)
   다) 본인 인증 방법은 PASS앱 인증, 증권용/범용 공동인증서 인증, 카카오 인증을 통해 주주 본인을 확인 후 의안별로 의결권행사 또는 전자위임장 수여
   라) 수정 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 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기권으로 처리

5. 전자증권제도 시행에 따른 실물증권 보유자의 권리 보호에 관한 사항
   2019년 9월 16일부터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되어 실물증권은 효력이 상실되었으며, 하나은행의 특별(명부) 계좌주주로 전자등록되어 권리행사 등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보유 중인 실물증권을 하나은행 증권대행부에 방문하여 전자등록으로 전환하시기 바랍니다.
   - 하나은행 증권대행부 주 소 :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72 (여의도동 43-2)
     연락처 : 02-368-5800(대표번호)

6. 주주총회 참석 안내
   가) 주주총회 참석 시 본인일 경우에는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을, 대리인일 경우에는 위임장(위임인의 인감날인), 위임인의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서류 미비 시에는 주주총회 참석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나) 주차장이 협소하오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주주총회 소집 통지 방법 안내

구 분	통지 방법	관계법령
① 주주총회 소집	· 전자공시시스템 및 홈페이지 공고 · 발행주식총수 1% 초과 주주 개별 통지	· 상법 제54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 정관 제19조 2항

금번 주주총회는 기념품을 지급하지 않으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7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천호대로 64

동아쏘시오홀딩스

대표이사 김 민 영 (직인생략)

[안건 참고자료]

● 제1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변경 전 내용	변경 후 내용	변경의 목적
제1조(상호) 이 회사는 동아쏘시오홀딩스주식회사(영문 Dong-A Socio Holdings Co.,Ltd.)라 한다.	**제1조(상호)** 이 회사는 동아제약주식회사(영문 Dong-A Pharmaceutical Co., Ltd.)라 한다.	동아제약 소규모합병 및 사업지주회사 체제 전환에 따른 정관 정비
제2조(목적) 1. ... 7. (생략) 8. 의약품, 의약부외품, 화공약품, 수의약품, 농예약품, 생물학적 의약품 등의 제조, 수출입 및 판매업 9. ... 29. (생략) 30. 동물용 의약품 등의 제조 및 판매업 31. ... 39. (생략) 40. 전각호와 관련한 일체의 부대사업 및 투자 41. (신설) 42. (신설) 43. (신설)	**제2조(목적)** 1. ... 7. (현행과 같음) 8. 의약품, 원료의약품, 의약부외품, 화공약품, 수의약품, 농예약품, 생물학적 의약품 등의 제조, 수출입 및 판매업 9. ... 29. (현행과 같음) 30. 동물용 의약품 등의 제조, 수출입 및 판매업 31. ... 39. (현행과 같음) 40. 건강기능식품, 건강기능식품 원료의 제조, 수출입 및 판매업 41. 반려동물 사료, 용품 등의 제조, 수출입 및 판매업 42. 의약품, 의약외품, 의료기기, 건강기능식품, 식품, 화장품, 생활용품 가공의 위수탁업 43. 전각호와 관련한 일체의 부대사업 및 투자	
제27조의2(물적분할 자회사의 주식 처분 등) ① 회사는 2013년 3월 1일을 분할기일로 하여 일반의약품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여 설립한 자회사(이하 본 조에서 "물적분할 자회사"한다) 주식을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주주총회의 승인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이상의 수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물적분할 자회사가 영업양도(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승인하기 위해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 그 주주총회에서 회사가 물적분할 자회사의 주주로서 행사할 의결권의 내용을 정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제27조의2(삭제)**	
<신 설>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 개정규정은 회사와 동아제약주식회사 간 2026년 7월 27일자 합병계약에 따른 합병의 효력 발생을 조건으로 하며, 합병기일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합병기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신설 2026.09.22>	시행시기에 따른 부칙 반영